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또는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 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에게 통지 시 미기재		

※ 유의사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합니다)를 보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